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가단515276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1. B

소송대리인 C

2. D

변론 종결2020. 9. 17.

판결 선고2020. 10. 15.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1,805,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2019. 11.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20. 8. 21.까지는 연 6.9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피고 D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한도로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구상금 101,805,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2019. 11.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8. 21.까지는 연 6.9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D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한도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남수진

별지